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신설 2025.10.01.

제1조 (시행세칙)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제2장 제2절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 진행과 관련된 원칙)

①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 공개의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 표결, 회의 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 자유의 원칙 : 공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 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 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 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번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한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 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 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개의’를 제한한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 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 독회에서 제1 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 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 안건을 지칭한다. 보고 안건, 인준안건, 심의 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 특별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 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 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 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 발언 : 자신의 신상 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공학대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 발언 : 회의 운영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 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 설명을 한다.

④ 발언 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② 의장이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③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④ 의장은 회칙 개정 시 '개정', '신설', '문구 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단, 전부 개정 시에는 조항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 선언 (재적 대의원 및 출석 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 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4. 보고 안건
   5. 인준안건
   6. 논의 및 의결 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제8조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①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순서가 확정된다.
②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 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 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 개정을 다룰 때 활용한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 제출, 의안 발의, 안건 상정)
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 특별

기구는 공학대회에 보고 안건, 인준안건, 심의 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전까지,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나 다음 공학대회로 이월한다.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 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 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 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 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 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 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① 찬반 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2조 (표결)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대의원은 거수 혹은 구두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준안건,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표결 내용과 함께 단위 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으로 표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예·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공학대회는 표결로써 예·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심의 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하에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세칙 개정)

① 본 시행세칙의 개정 주체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다.

② 본 시행세칙 개정안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본 시행세칙은 공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